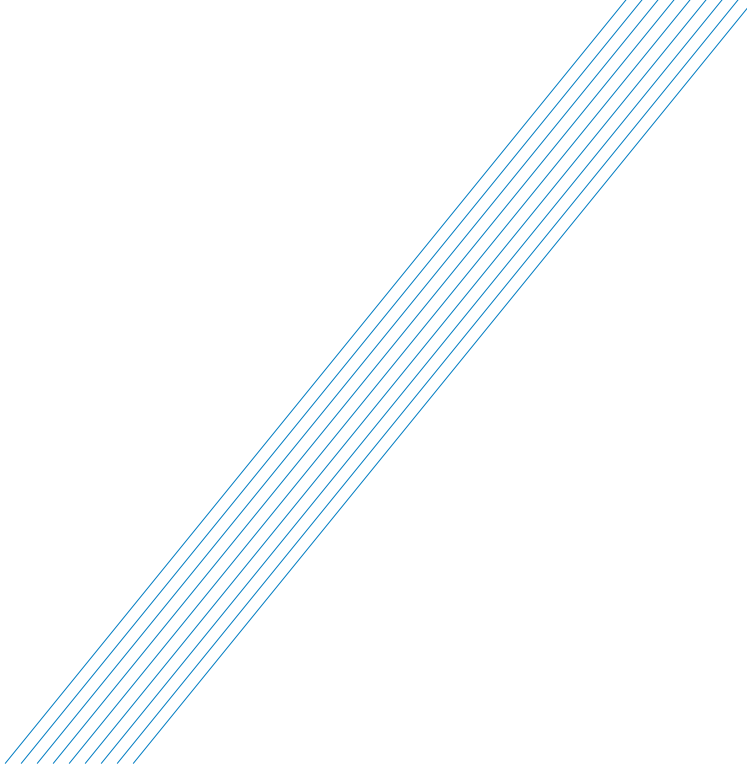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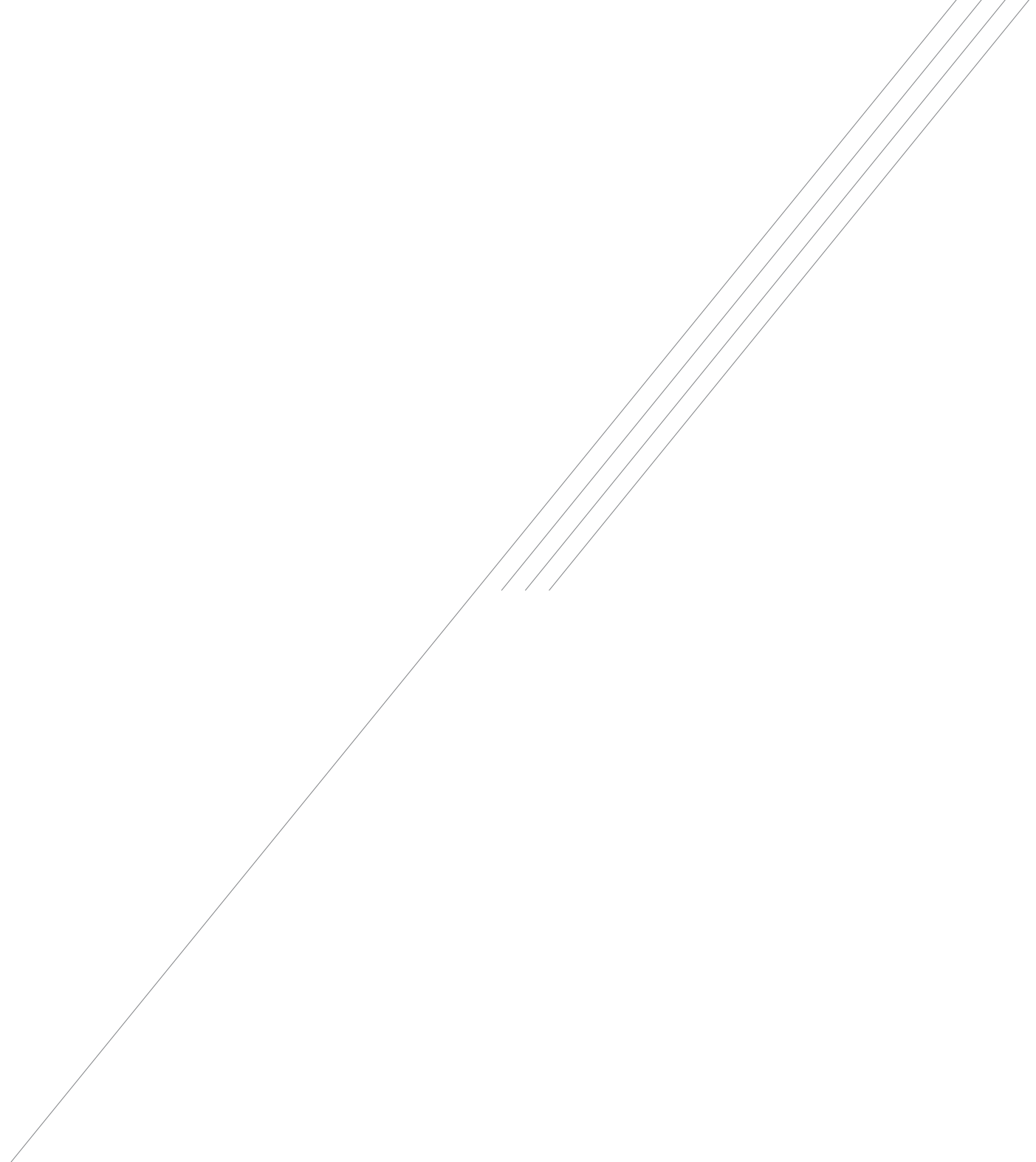




NYPI YOUTH REPORT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Vol.15 _ 2011. 09. 23 | 성윤숙 연구위원 ●



NYPI YOUTH REPORT

Vol.15 _ 2011. 09. 23 | www.nypi.re.kr

발행일 2011. 09. 23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2188-8800

팩 스 2188-8869

인 쇄 양동문화사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2011. 09. 23 | 성윤숙 연구위원 ●

CONTENTS

- 1. 청소년의 성매매 현황과 특성 _ 03
- 2.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증가 원인 _ 05
- 3. 정책적 대응방안 _ 07
- 4.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_ 12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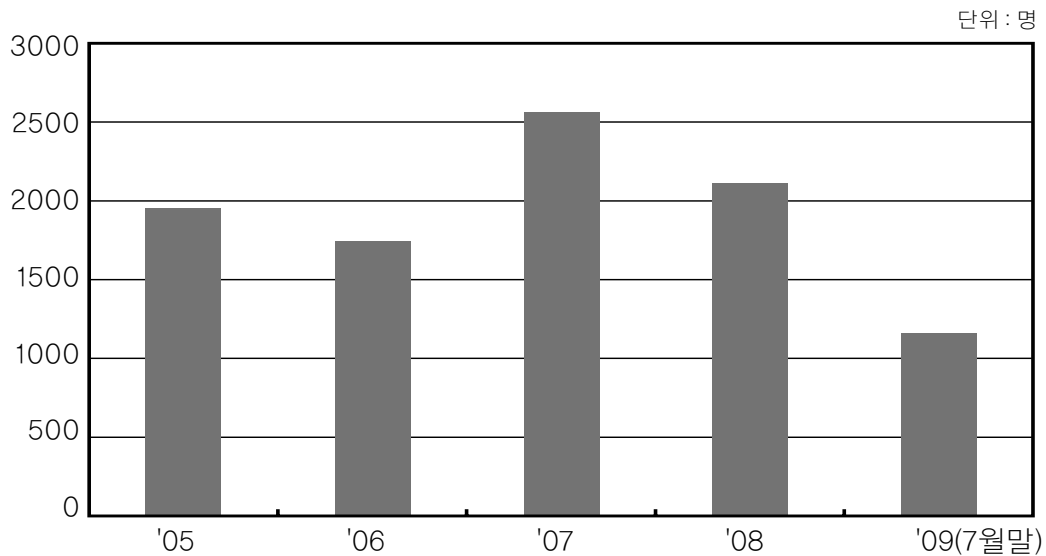
- 최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음.
 - ▶ 대상 연령층의 저연령화, 상습적 성매매 청소년의 증가 현상
 - ▶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
- 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경기침체 및 매체환경 변화에 기인
 - ▶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가출 증가
 - ▶ 인터넷 확산으로 손쉽게 성매매 파트너를 구할 수 있음
-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과 차단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
- 주요 대응방안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치명적·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차단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상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예외적 감청 허용
 - ▶ 이성교제 사이트에 대한 제도적 규제 강화
 - ▶ 인터넷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 채팅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 ▶ 성매매 우려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

1. 청소년의 성매매 현황과 특성

■ 청소년 성매매의 추이

- 성매매특별법 시행(2004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추세
※ 1,946명('05년) → 1,745명('06년) → 2,582명('07년) → 2,112명('08년) → 1,151명('09년 7월말)

【그림 1】 청소년 성매매 관련 검거인원



- 청소년 성매매 사건 검거인원의 대상별 구성(보건복지가족부, 2008b)
 - ▶ 행위자 71%(1,835명), 업주 등 관련자 9%(242명), 대상 청소년 20%(505명)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 사건비율이 42%(771건)에 달함 (보건복지가족부, 2008b).
 - ▶ 기타 : 강제추행 35%(643건), 강간 21%(385건), 성매수 알선 2%(40건)

■ 최근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의 특징적 양상

※참고문헌 : 성윤숙·박병식(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8b),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차.

①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저연령화

- ▶ 첫 성매매 연령 : 16~17세가 56%로 가장 많고, 13~15세도 3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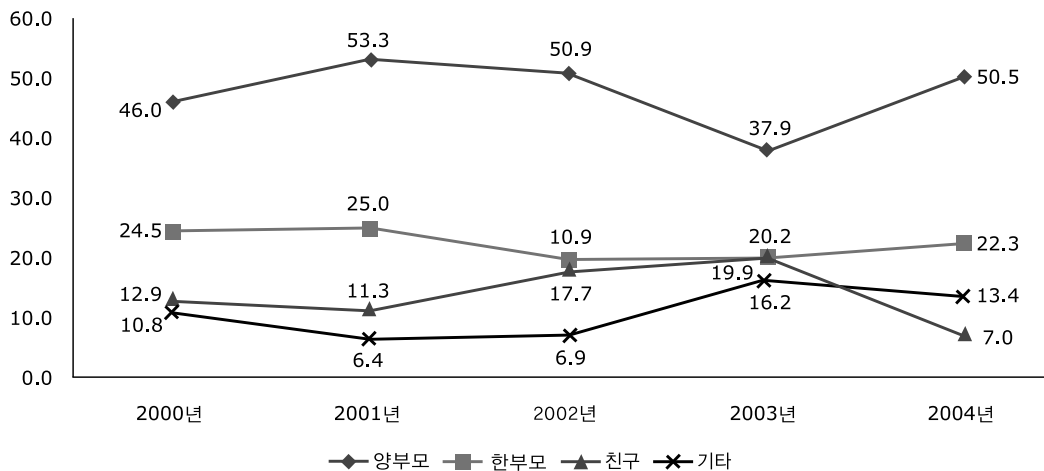
② 상승적 성매매 청소년의 증가

- ▶ 성매매 회수 '10회 미만'(37%)보다 '10~50회 미만'(40%)이 더 많고 '100회 이상'이 21%에 달하고 있음.

③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출신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

- ▶ 특히, 일반가정 중에서 양부모인 경우가 47.2%로 가장 많음.

【그림 2】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 피해자 동거인의 비율변화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8b).

④ 성매매를 계기로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 증가

○ 성매매관련 범죄피해 사례(본원 인터뷰대상자 43명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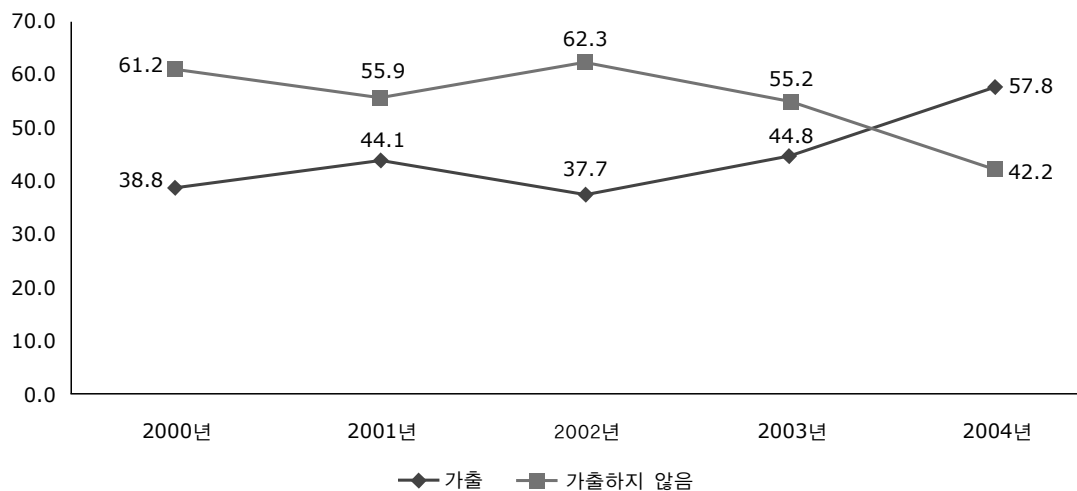
- ▶ 돈을 받지 못함(16명), 변태행위강요(7명), 폭행(7명), 돈을 덜받음(6명), 성병 감염(5명), 성폭행(3명), 협박(3명), 집단성행위(2명), 욕설(2명) 등
- ▶ 이외에도 납치, 사기, 성매매 강요, 갈취, 수면제 복용, 임신, 약속불이행, 키스알바 중 성관계 강요 경험 등 인권침해 사례 빈발.

2.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증가 원인

■ 손쉽게 성매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매체환경의 변화

- 가출은 청소년 성매매로 연결되는 주요 경로
 - ※ 심층면접 대상 43명 중 88%(38명)가 가출경험 있음(성윤숙 · 박병식, 2009).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가출경험자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 ※ 38.8%('00년) → 44.1%('01년) → 37.7%('02년) → 44.8%('03년) → 57.8%('04년)
(보건복지가족부, 2008b).

【그림 3】 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피해자 가출여부의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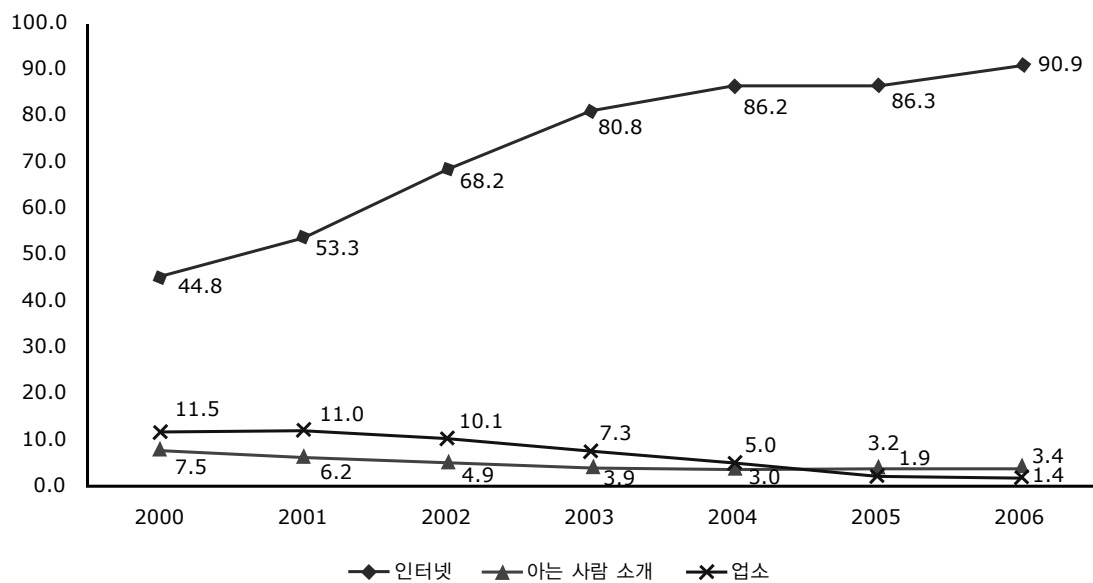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8b).

■ 손쉽게 성매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매체환경의 변화

○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임.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비율 : 2000년 44.8%에서 2006년 90%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보건복지가족부, 2008b)

【그림 4】 청소년대상 성매매수 범죄자와 청소년 접촉경로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8b).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주로 채팅방을 통해 약어나 은어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짐(성윤숙 · 박병식, 2009).

3. 정책적 대응방안

■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예외적 감청 허용

-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고려, 사전 예방·차단을 위한 비상조치 필요
-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검토
- 형사사법기관(또는 그 위임기관)이 성매매 우려가 높은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 내용을 검토하고 적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 신설하고,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동법률 포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제○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청소년 성 매수에 이용되었거나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기통신망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 매수를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정보통신법 제8조, 9조 및 9조의 2를 준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3조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하 생략)

- 감청의 남용·악용 방지를 위해 감청의 정당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만남 사이트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 인터넷의 이성교제 사이트(만남사이트)는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 미비
-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하에 사이트 개설시 신고 의무화 제도로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 (정의)

13.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이란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를 전시하며, 그 전달을 받은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2조의4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자의 신고 의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정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명확히 하여 범법자 등에 의한 사이트 운영 제한 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4조의2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2조의4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54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관련 범죄로 벌금형(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3. 만(연) 19세 미만의 청소년
4.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 불법 게시물 삭제 의무화

- ▶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 유인·조장 관련 게시물(및 대화내용) 발견시 해당내용을 삭제하도록 의무화
- ▶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제3자의 신고로 인해 이를 알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정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전항의 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 2항의 신고를 받은 정보통신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해당 사이트에 개입하여 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로 규정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인터넷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청소년 성매매 예방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전담조직 또는 협력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함.
- 전담조직은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성보호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단속 및 효과적인 처벌
- ▶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성범죄자 유전자, 신원정보 등 관리, 인터넷상 열람 업무
-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피해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
- ▶ 교육 및 제도개선업무:
재범방지 및 일반인 대상 교육, 인터넷 환경의 개선 등

〈선진 각국의 사례〉

- ※ 영국의 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CEOP) :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성매매, 아동 착취 예방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 미국의 “안전한 어린시절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 : 법무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의 성착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프로젝트. 연방 검찰, 아동대상 인터넷 성범죄 전담반(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ICAC) Task Forces), 연방수사국(FBI), 미국 우편검사국, 이민국, 연방보안관과 같은 정부기관들과, 국립 미아 및 어린이 착취방지센터와 같은 아동권리 보호기구, 그리고 주 및 지방검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채팅 사이트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채팅 사이트는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이 되고 있음.
- 일정 규모의 채팅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 성매수 시도자 및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에 활용
- 성매매 사례 적발시 신속 대처를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의 사후영장 제도 도입 검토

■ 성매매 피해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현행 각 부처/기관에 분산된 지원체계의 합리적 통합 및 조정
 - ▶ 긴급전화 서비스(“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청소년전화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중복 기능 조정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상황·여건을 고려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 ▶ 정신적·신체적 재활을 위한 심리·의료 치료 확대
 - ▶ 진학 희망 청소년에게는 검정고시 또는 대안학교 진학 지원
 - ▶ 취업 희망 청소년들에게는 직업훈련 참여기회 제공

■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실시

- 현재 시행중인 실명제는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포털사이트에 국한됨.
- 이용인원과 더불어 사이트 정보내용에 따른 실명제 도입이 필요함.
 - ▶ 성매매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소규모의 채팅, 이성교제 사이트 등
- 성매매가 빈발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완전실명제” 의무화 도입 고려
 - ▶ 접속시 본인 확인 뿐만 아니라 아이디와 더불어 실명이 공개되도록 함.

4.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 정책의 비전과 목표, 정책영역

【그림 5】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정책의 비전과 목표

비전

여성청소년이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구축

목표

-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교육 및 치료·선도함으로써 재유입 방지
-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 생계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설 마련
- 처벌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수자의 재발방지
- 인터넷 성매매 감시체계 확립
-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놀이문화 형성

예방정책

- 교육
- 홍보
- 단속

보호정책

- 교육
- 치료
- 자활

처벌정책

- 교육
- 단속

* 출처 : 성윤숙·박병식(2009).

■ 영역별 정책 추진과제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예방 정책	교육	·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상담 시스템 체계화 · 청소년대상 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청소년 성 주체성 중심의 학교 교육강화 ·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가 양성 · 초등학교 전 학년 성교육의 정규 과목화
	홍보	· 인터넷 성매매 예방·계도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 대국민 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 ·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단속	·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강화 · 가출·폭력 피해자의 긴급구호 시스템 마련 · 인터넷 실명제 확대실시 ·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성인 신분확인 의무제 강화 ·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차단
보호 정책	교육	·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위기교육센터 확대 설치 ·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성매매피해여성청소년을 위한 개입 매뉴얼 개발
	치료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재활 교육의 실시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성병 및 정신적 치료의 무상지원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치료기관 연계 · 3회 이상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여 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실시와 반강제적인 교육과 자활 실시
	자활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쉼터지원 확대 · 성매매피해청소년 재유입방지 '청소년성장캠프' 확대 · 학교·청소년지원센터·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청소년근로지원 시스템 제도화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단기보호소 확대설치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단기형 대안학교 구축 ·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설립 · '두드림프로젝트'등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확대지원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정책추진과제
처벌 정책	교육	· 군인, 직장인, 대학생 대상 여성청소년 성구매자 예방교육 · 존스쿨 교육 40시간으로 확대 실시
	단속	· 인터넷성매매 사이버수사대 전담반 설치 · 인터넷성매매 관련 사이트 처벌강화 · 경찰의 단속의지와 전문인력 충원 · 청소년대상 성매매 가중처벌제도 도입 · 인터넷수사대, 성매매전문상담원, 검찰, 시민사회가 팀으로 구성되어 인터넷 성매매를 감시하고 단속·처벌하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 여성청소년 신고시 보호제도 구축 · 성매매유인행위 처벌제도 정착 · 게임, 채팅사이트에 '간편 신고창' 구축 · 성매매유인행위 발견 시 단속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장의 예외인정 · 책임부서의 명시 및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 · 각 경찰청에 인터넷성매매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적발 · ISP(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 및 유기적 협조 신상공개제도 활용 · 인터넷상의 성매매 합의를 강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단속기관에 강제열람권 부여 · 게임, 채팅사이트에 적발과 처벌광고의 게재 · 신고시 포상제도 및 파파라치제도 도입 · 지역 권역별 단속전담팀 구성

* 출처 : 성윤숙 · 박병식(2009).

■ 참고문헌

- 경찰청(2009).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내부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a). 2008 아동·청소년백서.
- 보건복지가족부(2008b).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차.
- 성윤숙·박병식(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http://www.ncsl.org/IssuesResearch/CivilandCriminalJustice/HR4472AdamWalshChildProtectionandSafetyAc/tabid/12699/Default.aspx>.

NYPI YOUTH REPORT 과월호 안내

- 제1호 경제위기와 빈곤
- 제2호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 제3호 글로벌 환경 변화와 청소년
- 제4호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 제5호 청소년 인권
- 제6호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 제7호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 제8호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 제9호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
- 제10호 다문화 가정 및 장애아동 ·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 제11호 멘토링과 청소년 사회 참여
- 제12호 창의적 체험 활동
- 제13호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
- 제14호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자료집 총 10권 발간 안내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 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
(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 행동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본 책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1 기본연구과제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I
- 「창의적 체험활동」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연구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연구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 II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I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I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청소년 도덕성 발달 검사 도구 표준화 연구 I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한국 아동·청소년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사업 I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